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82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경기침체(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특별 보증 용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과 태풍·홍수·한파 등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재난 범위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함(안 제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의3).
- 특별 무이자 용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기 타

- 1) 현행 조례: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2024. 8. 23. ~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3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를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u>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p> <p>4. (생략)</p>	<p>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 ----- -----</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3(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u>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p> <p>4.·5. (생략)</p>	<p>제5조의3(소상공인 보호)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 ----- ----- ----- -----</p> <p>4.·5. (현행과 같음)</p>
<p>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생략)</p>	<p>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현행과</p>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생략)

같음)

② -----

----- 수
있으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9.] [(일부개정) 2023.04.19. 조례 제13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5.1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제5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9.]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4.19.]

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 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 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5.13>
제5조의3(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4.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 (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
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4.19.]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제5조의3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811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63호, 202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잠시멈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332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